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, ‘수취인불명’ · ‘기타’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11월 13일

종로구청장



- 공고명칭 :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 : 2024. 11. 13. ~ 2024. 11. 26.
- 관련법령 :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9조
- 위반사항 : 출판사 변경신고 지연
- 공고사항
아래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종로구 문화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FAX(02-2148-5818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: 2024. 12. 10.까지(자진납부시 과태료금액 20%감경)
- 공시송달 대상자

성명 (법인명)	납세자 기본 주소	반송사유 (반송일)	등기번호	처분내용
김*옥	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*로 2*6, 21*호	기타 (2024.10.21.)	1095609658473	과태료 금1,000,000원 (기한 내 자진납부시 20% 감경 금800,000원)
브*드*컴퍼*	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*로 *6, *층	수취인불명 (2024.10.15.)	1095609658472	과태료 금1,000,000원 (기한 내 자진납부시 20% 감경 금800,000원)
(사)다*백*	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1*길 *2, *층	기타 (2024.10.21.)	1095609658474	과태료 금1,000,000원 (기한 내 자진납부시 20% 감경 금800,000원)

- 공고장소 : 종로구 및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
- 문의사항 : 종로구 문화과(종로구 새문안로 41, 12층) ☎02-2148-1824